

2024 팜엑스포 부스 & 강의집 광고 신청서

주최 :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대한약사회관 3층 T. 02-2182-9625 E-mail.: yoodj11@kpanews.co.kr

업체정보

참여행사 (단일선택✓)	제34회 울산팜엑스포(4/7)		제35회 대전팜엑스포(4/28)		제36회 대한민국팜엑스포(5/19)	
	제37회 경북팜엑스포(6/2)		제38회 충남팜엑스포(6/16)		제39회 경남팜엑스포(6/30)	
	제40회 호남팜엑스포(9/1)					
상호명						
담당자				부서/직위		
전화				핸드폰		
이메일				FAX		
업종	1.계약() 2.유통/판매() 3.관련기관() 4.기타()					
전시품목						

참가 및 부대시설비

구분	항목	단가	신청수량	금액 (부가세없음)	비고
팜엑스포 부스 (3X3m)	독립	4,000,000원	부스	₩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	4,500,000원	부스	₩	전시면적+조립부스

※ 조립부스 제공내역:

부스간 벽체 칸막이, 상호간판, 파이텍스, 전기배선(2구콘센트1개), 전기 1kW, 기본조명(형광등 1개, Spotlight 3개), 가구비품 1set(상담테이블 1개+의자4개, 안내데스크1개)

※ 부스 신청서 제출 후 추가 부대시설의 경우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강의집

항목	단가	신청수량	금액 (부가세없음)	비고
표지 4면	5,000,000원		₩	사이즈 A4 사이즈 여백 각 3mm 추가
표지 3면	3,000,000원		₩	
표지 2면	4,000,000원		₩	
내지면	1,000,000원		₩	

(*입금시 업체명 기재요망)

참가비 납입처 | 하나은행 138-029065-00804 예금주 : (사)대한약사회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이면수록)을 수락하고 참가비(신청금액과 동일) 납입,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상기와 같이 '2024 팜엑스포'에 참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서 제출: 약사공론 유성준 대리 T. 02-2182-9625 E-mail.: yoodj11@kpanews.co.kr

2024년 월 일

담당자 (인)

대표자 (인)

(본 계약서에 날인 한 사람은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위 신청약식에서 선택한 "제 34 회 울산 팜엑스포" "제 35 회 대전 팜엑스포" 또는 "제 36 회 대한민국 팜엑스포" 또는 "제 37 회 경북 팜엑스포" 또는 "제 38 회 충남 팜엑스포" 또는 "제 39 회 경남 팜엑스포" 또는 "제 40 회 호남 팜엑스포"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대한약사회약사공론"을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참가비의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 전시부스 배정

1.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 특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업체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치설치 전에 전시자에게 할당된 공간의 위치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공간 사용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전시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제 5 조 현장 직매행위

1. 전시자에게는 현장 직매 전시품에 수반되는 관세나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현장직매를 원하는 전시자는 사전 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입조건

1. 참가계약 신청 시 지정된 기한 내에 주최자에게 참가비의 전액을 납부한다.
2.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압류할 수 있다.

제 7 조 해약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포기한 계약 전시면적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해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전시자는 기납입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해약금 기준은 아래와 같다.

행사일 기준 30 일 전 취소 시: 참가비의 50% 납부

행사일 기준 15 일 전 취소 시: 참가비의 70% 납부

행사일 기준 5 일 전 취소 시: 참가비의 90% 납부

제 8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을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해체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전시물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단,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이다.

제 12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보증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증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선택한 전시회의 지역전시회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위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대표자(신청자) :

(인)